[붙임1] 대출거래추가약정서(보금자리론용)

(제정 2026.3.10, 시행 2026.3.10.)

※ 은행은 채무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 "기본약관")과 가계대출거래 부속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 출 거 래 추 가 약 정 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주식회사 은행 앞 년 월 일

채무자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주1]인 매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며,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다주택자"라 함은 매도인이 포함된 "세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매도주택 포함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로, 매도인이 포함된 "세대"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제2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제3조 (전입의무)

① 대출 실행 이후 채무자는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이후 전항에 따라 채무자가 전입을 완료한 경우,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은행 또는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및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추가약정 위반**에 따라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됩니다.

1. 채무자가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 무 자 : (인)